

미국 통신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김방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The Recent Tre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Market

Pang-Ryong Kim*

IT Services Research Division, ETRI

prkim@etri.re.kr

요 약

미국에서는 1996년에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어 오던 연방통신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2월은 1996년 전기통신법 개정 10주년이 된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IP화의 진전이 계기가 되어 통신법 재개정의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1996년 전기통신법 성립 배경을 살펴 본 다음, 광대역화, VoIP 등장 등 동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10년간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어 있는 개정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통신법 개혁 논의의 행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서론

2006년 2월은 1996년 전기통신법(이하, 「96년 통신법」) 성립 10주년이 된다.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성립된 동 법은 19「34년 통신법」(이하, 「34년 통신법」)의 62년 만의 대 개정이라는 의미에서 성립 당시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정보통신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동 법이 성립된 지 9년째 된 2005년에는 VoIP를 비롯한 IP 기반의 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동 법의 규제 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통신법 개혁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96년 통신법」이 성립된 배경에 대하여 고찰한 후, 최근 들어 통신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나아가서 향후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96년 통신법」 성립의 배경

미국의 통신방송 정책은 1996년까지 1934년에 성립된 「34년 통신법」의 규제 하에 놓여 있었다. 또한, 동법의 성립에 의하여 통신방송을

규제 및 감독하는 독립행정위원회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설치되었는데, FCC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상무성 정보통신청(NTIA)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96년 통신법」은 규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채, FCC의 폭넓은 자유재량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CC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FCC는 독립행정위원회라고는 하나, 모든 위원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된다. 이것은 check and balance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임명한다. FCC에는 폭넓은 자유재량권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산 승인이나 위원 승인 과정과 관련하여 의회는 FCC를 감독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현저한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34년 통신법」이 근원적인 개정 없이 적용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행정기관인 FCC가 반 입법, 반 사법적 기능을 행하는 행정위원회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AT&T의 분할 과정

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 자유화 과정에서 사법성과 재판소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서 강력한 압력 단체인 AT&T의 저항도 근본적인 법 개정이 장기간 의회에서 행하여지지 못하도록 한 원인이 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항공업계와 운송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으나, 통신업계에서는 AT&T의 강력한 반대로 신통신법의 성립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거리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사법성과 AT&T와의 화해 내용을 결정한 Greene에 의한 최종동의판결(MFJ: the Modification of Final Judgement)은 1980년대 미국 통신시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MFJ의 핵심 내용은 시내와 장거리·주간을 분리하는 전화시장의 이분법에 있다. 시내교환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자본 설비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매몰 비용(sunk cost)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내전화에는 독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장거리·주간 전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케이블 기술에 대항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위성, 광섬유 등 유력한 대체적 기술의 출현에 의하여 시장은 기술간 경쟁에 기초한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1]. 이러한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장거리·주간전화에는 이미 AT&T와 경쟁관계에 들어간 MCI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도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의 최종동의판결(MFJ)로 장거리전화시장에는 경쟁도입이 이루어진 반면 시내전화시장에는 경쟁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부문에 독점을 허용하고 규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판단은 기술진보에 의하여 곧 진부한 논리가 되고 말았으며, 그 결과 MFJ의 이분법 접근의 유효성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시내·장거리·주간의 통신부문 전역에 걸친 경쟁도입은 「34년 통신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1993년부터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통신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의회에서 장기간의 논쟁을 거친 후에 성립된 「96년 통신법」은 업계 간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 법은 「34년 통신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콘텐츠 규제나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등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관한 추가조문도 적지 않다. 한편 동 법은 업계 간의 울타리를 넘어 상호 진입을 인정함으로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96년 통신법」 성립에 의하여 지역전화사업과 CATV사업의 상호 진입, 장거리통신사업자의 지역통신사업에의 진입, 지역통신사업자의 장거리통신사업에의 진출이 허용되었다. 또한 지역전화회사에 의한 영상서비스를 확대하는 오픈 비디오 시스템도 제도화되었다.

한편, 1992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클린턴-고어 대통령후보 콤비가 등장한 것을 계기로 「정보 슈퍼 하이웨이(전 미국 정보기반: NII)」 구상이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보 슈퍼 하이웨이」 구상은 NII의 구축 주체 문제를 둘러싸고 당초 AT&T와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반발을 했기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2]. 그 후, 1995년이 되면서 Main 주의 Olympia Snowe 민주당 상원의원과 West Virginia 주의 John Rockefeller 민주당 상원의원의 주도적 노력과 공화당 농촌지역 의원들의 협력 하에 보편적서비스 수정 조항이 통신 법안에 편입되었다. 「정보 슈퍼 하이웨이 구상」은 「96년 통신법」에서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3]. 그리고 동 법에 기초하여 새롭게 학교나 도서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기관에 보편적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저 소득층을 위한 ‘라이프라인’, ‘링크업 아메리카’라고 하는 보편적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으나, 「96년 통신법」에서는 그 서비스 수급 대상자가 미국 전역에 걸쳐 학교, 도서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으로 확산된 점이 보편적서비스 정책 전개에서 나타난 큰 변화였다[4].

3. 「96년 통신법」 성립 후 최근까지의 경과

「96년 통신법」 성립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정보통신산업계에서 어떤 이슈가 부상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FCC 스태프, 연구기관의 연구원, 연방의회 의원 등, 정보통신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제기된 이슈는 “IP화의 진전이 「96년 통신법」에서는 감안되지 않았다.” “현실의 기술 발전과 법 제도와 괴리가 심하다.” 는 두 가지 점이다. 네트워크 융합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34년 통신법」의 틀을 답습한 「96년 통신법」에 의하여 전송 파이프 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파이프별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라고 하는 구분법이 적용되고 있고[5], 전기통신서비스로 구분되면 Common Carrier 규제가 적용되어 접속료 지불의무, 보편적서비스요금 각출의무, E911(긴급통보) 접속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파이프별 규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Skype 사용자가 미국 전역에서 1000만을 넘어가고, 인터넷전화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의회와 FCC에서는 IP 기반의 서비스를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의 어느 쪽으로 구분할 것인지, 또한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인터넷전화를 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던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즉, 인터넷전화서비스는 국제전화 요금과 접속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비규제 환경 하에서 성장하여 왔다. 이는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통화서비스를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비 규제 대상이었던 인터넷전화에 대하여 최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첫째, 기존 사내전화사업자들이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전화가 비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주(州)의 세수(稅收) 감소를 우려한 주 정부 당국의 규제정책 때문이다. 셋째,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FCC로 하여금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전화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도청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쟁은 정부 당국과 사업자 간의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각 주의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일반 전화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진원지가 된 것은 Minnesota 주로서, 2003년 8월

Minnesota 주의 공익사업위원회(PUC,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인터넷전화사업자인 Vonage에게 전화회사로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전화서비스 면허를 취득하도록 명령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즉, Minnesota 주 공익사업위원회는 인터넷전화회사도 기존 전화회사와 동일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사업자인 Vonage에 대해 30일 이내에 정규 전화회사로서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명령하였다. 주 정부가 전화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최대 18%에 달하여 주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데이터 통신으로 분류되면 일부가 비과세되며, 그 결과 교육기관 및 도서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인터넷접속 경비조성 프로그램인 E-Rate 기금(교육용 특별할인요금)이나, 빈곤 지역 등에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보편적서비스와 같이 전화요금에 부과된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존속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수천억 달러의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권한이 미치지 않는 인터넷전화의 보급은 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기존 전화회사가 아무리 가격인하를 한다 해도 비과세 사업자인 인터넷전화사업자와 정면으로 경쟁하여 승산이 없게 된다.

원래 Vonage가 표적이 된 것은 이 회사가 제공하는 긴급통화서비스인 E911 서비스가 주(州)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 후 인터넷전화를 둘러싼 문제는 각 주로 확대되게 되어 Wisconsin, Alabama, North Carolina, Michigan, Colorado, Illinois, Virginia, Pennsylvania 등에서 일제히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 이슈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Illinois 주 상무국은 「전화사업을 하면 전화회사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인터넷전화회사를 일반 전화회사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Wisconsin 주의 규제 당국도 2003년 9월, 인터넷전화서비스 「Packet 8」을 제공하는 8x8에 대해 이 회사의 서비스에 일반 전화회사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주 정부가 규제에 나선 케이스로서는 Wisconsin 주가 두 번째였다.

한편 그 후 Vonage에 관한 Minnesota 주에서의 논쟁은 주 레벨에서 연방 레벨로 옮겨가 2004년 11월, FCC는 Vonage가 제공하는 VoIP 서비스를 주(州)서비스로 결론짓고, 미네소타 주법

에 의한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Vonage에 대한 Minnesota 주 PUC의 규제 조치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아직 많은 주에서 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인터넷전화의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California 주의 동향이다. 이 주는 2003년 9월 30일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전화사업자 면허 취득의 의무를 부여했다. 이 역시 인터넷 상에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전화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금 조달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 California 주 공익사업위원회(CPUC)의 면허 취득 요청에 응하지 않고, 대신 이 위원회의 인터넷전화서비스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2004년 2월, CPUC는 기존 전화망과 연결되는 모든 인터넷전화의 규제 방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투표 결과는 California 주 정부가 인터넷전화사업자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FCC 측에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인터넷전화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주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년 들어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 문제는 의회와 FCC에서 대단히 큰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FCC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도 E911 접속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2006년 1월 20일, 금년 들어 최초의 FCC 오픈 미팅에서도 VoIP 이용자에 대한 E911 접속서비스 개선 문제가 금년도 우선 과제의 하나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FCC는 인터넷전화서비스 규제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다. 규제기관인 FCC는 통신법의 틀 내에서 명령이나 결정을 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법해석은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를 통하여 IP화의 진전을 감안하지 않은 「96년 통신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4. 통신법 개혁 논의의 쟁점사항

그렇다면 통신법 개혁 논의의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경쟁촉진과 규제완화”이다. 「96년 통신법」의 규제 체제가 급속한 기술혁신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당을 초월하여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타 분야에 비하여 통신 분야에서는 당파 대립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백악관이나 의회 공화 공화당이 다수인 현재 상황에서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또는 포럼에서 공화당 주도로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화당 소속의 John Ensign 상원의원(네바다 주)은 2005년 7월 하순, ‘Broadband Investment and Consumer Choice Act (BICCA)’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nsign 의원은 10월 하순,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보수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강연을 행하였다. 이 강연에서 그는 「96년 통신법」을 미래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현대화할 목적으로 BICCA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힌 후, 미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세계 16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통신 분야에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경쟁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시장경쟁 도입이야말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nsign 의원은 자기가 제출한 법안은 ‘벨 지향’이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기술 중립적인 법안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도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보편적서비스 기금 개혁”이다. 인터넷전화와 휴대전화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장거리 통신시장이 축소되고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편적서비스 기금 개혁에 관하여는 의회와 FCC 쌍방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틴 FCC 위원장은 2005년 10월 26일에 개최된 「텔레콤 05 회의」에서 ‘현행의 매출액 베이스에 따른 각출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매출 베이스로 기금을 각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인터넷전화 및 IP 기반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전화번호에 기초한 각출 매커니즘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는 상반되는 법안으로 의회에서는 Lee Terry(네브라스카 주, 공화당) 하원의원과 Rick Boucher(버지니아 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2005년 11월 17일, 「2005년 보편적서비스 개혁법: Universal Service Reform Act of 2005」이라고 하는 초안(草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도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화번호 또는 IP 주소를 이용하는 모든 프로바이더에게 기금 각출 부담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통신법 개혁 뿐 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기금 개혁에 관하여도 초당파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의 범위에 관하여는 자유 대 보수의 대립이 크다. 자유진영은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브로드밴드 접속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나 도서관을 위한 보편적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E-rate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전미도서관 협회」나 「퍼블릭 테크놀로지(공공 기술)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Public Technology)」은 E-rate의 적용범위를 브로드밴드 접속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Terry Boucher 법안」에서도 보편적서비스 기금이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조성에 보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파 진영에서는 보편적서비스 기금 지원대상자는 빈곤자에 한정해야 되며, 브로드밴드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Jim Demint(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2005년 12월 15일, 「디지털 시대의 통신법(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DACA)」안을 제출하였다. DACA 법안에서는 FCC를 대신하는 경쟁 지향적인 준 엔티트러스트(Anti Trust) 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편적서비스 기금에 관하여는 기금 상한을 현행의 70억 달러에서 36억 5천만 달러로 대폭 인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Demint 의원이 제안한 기금규모 축소 법안에 대하여 AT&T나 Verizon은 환영을 표했으나, 농촌지역의 소규모 통신사업자들은 반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Demint 법안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PFF 정책안에서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은 브로드밴드를 보조할 필요가 없고, 대상을 저소득자 지원에 한정해야 하며, E-rate에 대하여는 패키지, 또는 일반재원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E-rate에 의한 시설내 배선지원을 제외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빈곤지역 소재 도서관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E-rate의 보조가 필수적이지만, PFF 법안은 E-rate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보편적서비스 개혁에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양분되어 있으나, 어느 쪽의 입장이든 “브로드밴드 시대의 보편적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성”이라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2005년 가을부터는 의회에서의 관심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옮겨가 통신개혁 논의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Ensign 의원은 2005년 10월 의회 강연에서 2006년에는 상원에서 통신개혁 논의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 부상될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의 통신소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부터 정보통신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상원에서는 1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비디오 콘텐츠’ ‘네트워크 중립성’ ‘보편적서비스 기금의 각출과 분배’ ‘FCC의 활동과 정책’ 등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하원 산업위원회 Joe Barton (텍사스 주, 공화당) 위원장과 상원 산업위원회의 Ted Stevens (알래스카 주, 공화당) 위원장은 통신법 개혁에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2006년은 통신개혁 논의가 워싱턴에서 활발하게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미국 통신법 개혁 논의의 쟁점 사항은 「경쟁촉진·규제완화」 및 「보편적서비스기금 개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기술혁신 속도와 법·규제 체제의 과리를 좁히기 위하여 통신관련 법령체계의 재정비 문제가 2006년에는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EU에서는 기술발전 추세를 규제체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이 규제체계는 종래의 수직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서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7]. 미국도 통신법 개혁과정에서 경쟁촉진·규제완화와 관련된

여 「2003년 프레임워크」를 많이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9월,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시내/시의 전화서비스의 통합,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의 통합,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범위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이 개선안도 미디어 융합 및 규제완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2003년 프레임워크」와 정책기조를 같이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과 통신을 미디어별로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2003년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 제도보다 훨씬 선진적인 규제 틀로 이해되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03년 프레임워크」 규제체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한계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금년에는 보편적서비스 기금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첫째,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동태적으로 정의하여 돕으로써 통신기술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둘째, 주기적으로 대상 범위를 검토하는 보편적서비스 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를 통한 비용분담은 경쟁중립적·비차별적 원칙하에 모든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편적서비스 정책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서비스 정책수립 방향은 공정경쟁 및 사업자간의 형평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사용자에게 보편적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자나 장애인들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참고 문헌

- [1] 김방룡(1996), “통신 산업에 있어서 기술진보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전자공학회지, 대한전자공학회, 제23권 제1호, pp.74-84.
 [2] USO Fitr Order 1997, p.95.

[3] 西田 達昭(니시다 다쓰아끼), 「보편적서비스」(原題 : 日米電話事業における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 김방룡 외 번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8, p.178.

[4] 西田 達昭(니시다 다쓰아끼), 「보편적서비스」(原題 : 日米電話事業における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 김방룡 외 번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8, pp.34-80.

[5] U.S. Congress,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SEC. 3. DEFINITIONS., PUBLIC LAW 104 - 104 - FEB. 8, 1996.

[6] 김방룡·유영상(2004),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동향 및 규제정책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9권 제2호, pp.103-114.

[7] 김방룡(2004) “미디어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 제29권 제11B호, pp.1001-1011.

[8] KDD總研R&A 2006년 2월호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